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9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구자근

김기웅 · 엄태영 · 박형수

유용원 · 강선영 · 김대식

곽규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러 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 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	
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	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		
대한 감면) ① (생 략)	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	②		
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			
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			
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			
공사(이하 이 조에서 "지방농			
수산물공사"라 한다)에 대해서			
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			
에 따라 지방세를 <u>2025년 12월</u>	<u>2028년 12월</u>		
<u>31일</u> 까지 감면한다.	<u>31일</u>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